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0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0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19. 10. 16. 총무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나.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안 제2조)
다.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 ~ 안 제8조)
라.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등(안 제9조 ~ 안 제15조)
2) 관리위탁 사항(안 제16조 ~ 안 제19조)
마.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안 제22조)
바.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 분리하여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2/3이상에 해당되어 전부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조, 제4조, 제31조, 제27조, 제44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059호

가) 예고기간: 2019. 08. 09. ~ 08. 30.(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부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공립 작은 도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법」에 수정하였고(안 제2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8조),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립 작은 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19. 10.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